숲속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 하에 계약 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② 계약 대상 :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등급 외 대상자를 포함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의 시설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계약 기간

1.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경제활동 등을 위해 노인 수발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다.

*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숲속주간보호센터

②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에서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3. 시설내의 청결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대상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대상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아.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대상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대상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의 의무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준이용료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① 이용료는 관련법규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변경되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의해 규정한다.

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으로 자부담 중 식사비(식사 하루 2회, 간식 1회)로 이용계약서에 의해 규정하되, 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으로 자부담 중 기저귀비용 등 각각 이용계약서에 의해 규정 하되, 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원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ㅅ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재계약 절차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 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대상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내용

서 비 스 내 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개인활동 지원	- 외출 동행, 산책 동행 -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가족소통을 위한 상담 등
기능평가 및 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 일상생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 작업치료, 인지재활 프로그램 - 기타 재활치료, 레크레이션, 사회적응훈련 등
영양 관리	- 시설 영양사 식단에 맞춘 식사 및 간식 제공 - 어르신 질환과 상태를 고려한 식사 및 간식 제공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응급 지원	- 응급상황 대처 등
시설환경관리 및 감염관리지원	- 환경관리, 물품관리 등 - 시설 소독 및 감염관리
간호처치 및 물리치료	- 관찰 및 신체 기능 측정 - 건강교육 및 상담 - 투약관리지도, 의료기관 의뢰 등 - 물리치료
이동서비스	- 대상자의 자택과 시설간의 이동 서비스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급여제공 기록지 및 프로그램일지 기록, 보고 등

* 입소보호 : 외래진료 및 입·퇴원 시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그에 대한 부담을 하고, 그 외에 두발관리 및 모든 서비스는 이용료에 포함

한다. 다만, 자부담이 발생되는 경우는 부담한다.

②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이동서비스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는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이동서비스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는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는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폭력성이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줄 때

바.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흡연자 (화재우려)

아. 이용규정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자. 시설은 대상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차.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시설이용 부적응자로 판정되었을 때